

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(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1. 시설 기준

가. 사무실

위기아동·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는 것

나. 상담실

1)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,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추는 것

2)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

2. 운영 기준

가. 관리규정

전담조직의 장은 조직, 인사, 급여, 회계,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.

나. 장부 등의 관리

전담조직의 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.